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거주자성명		생년월일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1 소계 (⑥+⑨+⑫+⑮+⑱+㉑)	⑥신용카드 (3월)	⑨직불·선불카드등 (3월)	⑫현금영수증 (3월)	⑮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3월)	⑱전통시장 사용분 (3월)	㉑대중교통 이용분 (3월)
					⑤-2 소계 (⑦+⑩+⑬+⑯+⑲+㉒)	⑦신용카드 (4~7월)	⑩직불·선불카드등 (4~7월)	⑬현금영수증 (4~7월)	⑯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4~7월)	⑲전통시장 사용분 (4~7월)	㉒대중교통 이용분 (4~7월)
					⑤-3 소계 (⑧+⑪+⑭+⑰+㉓+㉔)	⑧신용카드 (그 외)	⑪직불·선불카드등 (그 외)	⑭ 현금영수증 (그 외)	⑰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그 외)	㉓전통시장 사용분 (그 외)	㉔ 대중교통 이용분 (그 외)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㉔신용카드 사용분(3월) 공제 금액 (⑥×30%)	㉕신용카드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⑦×80%)	㉖신용카드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⑧×15%)	㉗직불카드등 사용분(3월) 공제 금액 (⑨+⑫)×60%	㉘직불카드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⑩+⑬)×80%	㉙직불카드등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⑪+⑭)×30%	㉚도서·공연등 사용분(3월) 공제 금액 (⑮×60%)	㉛도서·공연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⑯×80%)	㉜도서·공연등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⑰×30%)	
						㉞ 공제제외금액 계산			
㉚전통시장 사용분(3월) 공제 금액 (⑱×80%)	㉜전통시장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⑲×80%)	㉝전통시장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⑳×40%)	㉞대중교통 사용분(3월) 공제 금액 (㉑×80%)	㉟대중교통 사용분(4~7월) 공제금액 (㉒×80%)	㊱대중교통 사용분(그외) 공제금액 (㉓×40%)	㉞-1 총급여	㉞-2 최저사용금액 [(㉞-1)×25%]	㉞-3 공제제외금액	
㉞ 공제가능금액 [㉔~㉞합계 -(㉞-3)]		㉞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과 (㉞-1) ×20% 중 적은 금액]	㉞ 일반 공제금액 (㉞와 ㉞중 적은 금액)		㉞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㉞ > ㉞인 경우에 ㉞-㉞과 ㉞+㉞+㉞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㉞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㉞ > ㉞인 경우에 ㉞-㉞과 ㉞+㉞+㉞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㉞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금액 [㉞ > ㉞인 경우에 ㉞-㉞과 ㉞+㉞+㉞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㉞ 최종 공제금액 (㉞+㉞+㉞+㉞)

㉔-3 계산

구분	계산식	㉔-3
$⑧ \geq (㉔-2)$	$(㉔-2) \times 15\%$	
$⑥ + ⑧ + ⑪ + ⑭ + ⑰ \geq (㉔-2) > ⑧$	$⑧ \times 15\% + \{(㉔-2) - ⑧\} \times 30\%$	
$⑥ + ⑧ + ⑪ + ⑭ + ⑰ + ⑳ + ㉓ \geq (㉔-2) > ⑥ + ⑧ + ⑪ + ⑭ + ⑰$	$⑧ \times 15\% + (⑥ + ⑪ + ⑭ + ⑰) \times 30\% + \{(㉔-2) - (⑥ + ⑧ + ⑪ + ⑭ + ⑰)\} \times 40\%$	
$⑥ + ⑧ + ⑨ + ⑪ + ⑫ + ⑭ + ⑮ + ⑰ + ⑳ + ㉓ \geq (㉔-2) > ⑥ + ⑧ + ⑪ + ⑭ + ⑰ + ⑳ + ㉓$	$⑧ \times 15\% + (⑥ + ⑪ + ⑭ + ⑰) \times 30\% + (㉔-2) \times 40\% + \{(㉔-2) - (⑥ + ⑧ + ⑪ + ⑭ + ⑰ + ⑳ + ㉓)\} \times 60\%$	
$(㉔-2) > ⑥ + ⑧ + ⑨ + ⑪ + ⑫ + ⑭ + ⑮ + ⑰ + ⑳ + ㉓$	$⑧ \times 15\% + (⑥ + ⑪ + ⑭ + ⑰) \times 30\% + (㉔-2) \times 40\% + (⑨ + ⑫ + ⑮) \times 60\% + \{(㉔-2) - (⑥ + ⑧ + ⑨ + ⑪ + ⑫ + ⑭ + ⑮ + ⑰ + ⑳ + ㉓)\} \times 8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인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란에서 차감하고 "㉑~㉓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 ⑥ ~ ㉓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나. "⑥ ~ ⑧ 신용카드"란, "⑨ ~ ⑪ 직불·선불카드등"란, "⑫ ~ ⑭ 도서·공연등사용분"란, "⑮ ~ ⑯ 전통시장사용분"란, "㉑ ~ ㉓ 대중교통이용분"란은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다. "㉒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⑫~⑭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㉔-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㉑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㉔ 20년 귀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30만원입니다.
11.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